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본인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2조(보험계약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내로 하되, 본인은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단, 변액보험은 당일대출 당일상환 불가)

제3조(대출이자납부 등)

- (1)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된다.
- (2) 보험계약대출이자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도 단리 적용으로 연체이자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 (3) 이자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영업일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
- (4) 이자납부는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ARS)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5) 은행자동이체로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부일로 하며, 회사는 월 1회 청구한다. 단, 자동이체 계좌 변경으로 이체희망일에 미청구시 익월 이체희망일에 청구한다.

제4조(기한이익의 상실등)

- (1)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독촉이나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 ①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2. 8. 1.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2. 8. 1. 부터 2005. 3. 31. 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④ 2005. 4. 1.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 ⑤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 체납처분압류통지가 법원 또는 회사에 접수된 때
 - ⑥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파산, 회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때
 - ⑦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 ⑧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⑨ 기타 계약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보험계약대출채권을 보전하기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 (2) 제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한다.

제6조(주소변경통지)

본인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주소변경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부대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본인 및 회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본인 50%, 회사 50%]